

의안번호	제 212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도유(행정)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23년 3월 7일

도유(행정)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

의안 번호	212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3년 3월 7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남부3군의 균형발전 지원 및 지역맞춤형 정책연구사업 추진을 위하여 충청북도 출연기관인 (재)충북연구원 남부분원이 사용하고 있는 도유재산에 대해 그 사용료를 감면하고자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4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제2의2호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

2. 주요내용

도유(행정)재산 사용료 감면

- 대 상: 충청북도가 출연한 비영리 기관인 충북연구원의 비영리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행정재산
- 사용기관: (재)충북연구원 남부분원
- 재산위치: 옥천군 옥천읍 동부로 78, 남부출장소
- 사용면적: 건물 30.24㎡ ※ 건물 총 면적 1,440㎡
- 감면내역: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
- 적용시기: 2023. 4. 1. ~ 2027. 11. 27.
-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근거
 -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(사용료의 감면) 제1항 제4호
 -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제2의2호(사용료 감면)

3. 참고사항

□ (재)충북연구원 남부분원 현황

- 개 소 일: 2015. 7. 2.
- 설립목적
 - 남부 3군 중심의 지원을 통한 충북의 균형발전 견인
 - 충북연구원의 연구 역량 활용을 통한 연구 및 정책지원체계 구축
 - 남부권 발전을 위한 협력형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연계요소 발굴 등
- 주요사업
 - 권역별 정책과제 발굴 및 자문
 -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한 권역별 토론회·간담회 공동 추진
 - 지역 내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등
- 인 원: 3명(분원장 1, 명예연구위원 1, 전문연구원 1)

4. 관계법령 발취 : 불 입

《관련 법령 발췌》

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

제24조(사용료의 감면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4. 20., 2022. 11. 15.>

1.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·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
2.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, 그 상속인,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
3.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
4.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

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

제17조(사용료 감면) 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료 면제기간은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연수(年數)를 초과할 수 없다.
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식재산(이하 “지식재산”이라 한다)의 사용료 면제기간은 20년으로 한다. <신설 2015. 7. 20.>
- ③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인 그 부지의 사용료를 제1항의 연간 사용료에 합산한다. 다만, 부지 사용료를 따로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5. 7. 20.>
- ④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과 제3항에 따라 연간 사용료에 합산할 부지 사용료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부지의 가액은 최초의 사용허가 당시를 기준으로 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하며, 사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한다. <개정 2015. 7. 20., 2022. 4. 20.>

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“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<개정 2015. 7. 20., 2016. 7. 12., 2020. 12. 22., 2022. 4. 20.>

1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
 2.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
- 2의2.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

□ 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설립) ①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에 충북연구원(이하 “연구원”이라 한다)을 둔다.

② 연구원은 재단법인으로 한다.

제3조(사업)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도정발전에 관한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주요정책에 대한 조사·연구
2. 도, 도의회 및 시·군의 주요현안 사항과 제도개선에 대한 조사·연구
3. 도, 도의회, 시·군 및 다른 기관·단체로부터의 각종 연구 사업의 수탁
4.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·협력
5. 도정발전 및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관련된 국내외 주요현안 연구
6. 그 밖에 위 각 호의 부대사업과 연구원의 설립목적을 위해 필요로 하는 사업

제4조(이사의 추천) ① 연구원의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되, 당연직 이사는 연구원 정관에 명시된 사람으로 한다.

② 선임직 이사로 추천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

1. 학계·산업계·언론계·법조계·연구기관·시민단체 등에 종사하며, 전문성과 경영능력이 인정되는 사람
2.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,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자로서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

제5조(기금) ① 연구원의 시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충북연구원육성기금(이하 “기금“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
② 제1항의 기금 조성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.

1. 도, 공공기관, 민간단체, 기업, 개인 등의 출연금
2. 그 밖의 수익금

③ 연구원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.

④ 기금은 연구원의 시설 및 운영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.

제6조(운영경비) ① 연구원의 운영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
1. 기금운용의 과실수입
2. 용역수탁 등 연구사업의 수익금
3. 출판물 판매 대금
4. 그 밖의 수입

② 도는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제7조(분원 설치) ① 원장은 도 균형발전 및 상생협력을 위한 정책연구조사 등 지원을 위해 연구원 분원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연구원 분원을 설치할 경우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8조(연구·조사의 위탁) 도지사 및 시장·군수가 지방행정과 지역발전에 관련되는 연구·조사업무를 위탁하려는 때에는 연구수행의 가능성을 판단하여 다른 연구기관보다 우선적으로 연구원에의 위탁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22.10.7.>

1. 연구원에서 해당 전문분야의 연구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
2. 연구원의 수행과제가 과다하여 추가로 수탁하기 어려운 경우
3. 둘 이상의 연구기관과의 공동수행이 필요할 경우
4. 과제의 성격 및 성과물의 이용목적에 따라 다른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제9조(경영평가 등) 도지사는 연구원의 경영쇄신과 정책개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,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제10조(운영규정) ① 연구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 조례와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.

② 연구원의 정원, 임·직원의 보수, 기금의 관리와 관련된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·폐지 및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사항은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1조(준용) 연구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.

제12조(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